

# 생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http://peoplepower21.org)  
02-723-5302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http://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http://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http://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http://imhr.or.kr) 02-711-7588



2017  
공익제보자  
생활지원  
프로젝트





'공익제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외부에 알려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데  
기여한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공익제보 사례  
2012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2013년 N유업 본사의 대리점 횡포  
2014년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2015년 C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  
2016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 2017 공익제보자 생활지원 사업 프로젝트

##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2016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인	2,424,462원
2인	3,732,354원
3인	4,929,384원
4인	5,630,275원
5인이상	5,596,595원

출처 : 통계청, 2016

## 2. 지원내용

- ① 생계비
  -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6개월 간 차등지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에게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가가 진행함

## 3. 지원인원 11명 이내

##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① 신청서 접수 2017. 6. 19(월) ~ 7. 21(금)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tsc@pspd.org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7. 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 ② 심사 2017. 8. 7(월) ~ 8. 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 ③ 결과 통보 2017. 8. 23(수)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 심리치료 진행

##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 (가족 중 질병·장애인이 있는 경우)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